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8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4월 29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의 “예우대상자”는 이미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므로, 수강료의 감면대상을 “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”으로 규정할 경우 의미가 중복됨.

2. 주요내용

- “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”을 “예우대상자”로 수정함 (안 제9조제1항제6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1항제6호 중 “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” 을 “예우대상자” 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제2조 제1항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6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</p> <p>7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6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</p> <p>7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6호의 호 번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제2조제1항제 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<u>6.</u>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</u></p> <p><u>7.</u>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